

1. 개정이유

화재·폭발의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의 업무를 추가하고,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 대상 지하작업장을 구체화하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별목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목작업의 주요 사고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 의무를 추가하고, 근로자가 한파에 노출되어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 업무 추가(안 제241조의2)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된 화재감시자의 업무에 불꽃·불티의 비산 여부 및 화재 발생 여부의 확인 업무를 추가함.

나. 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 파열판 설치 의무 합리화(안 제262조)

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의 누출에 대비하여 현행 파열판 설치 외에도 안전밸브 및 그 후단에 배출물질 처리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함.

다. 화학설비 등의 사용 전 점검사항 명확화(안 제277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기 전 이와 관계된 안전장치 등의 기능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점검사항을 명확히 정함.

라.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 지하작업장 대상 구체화(안 제296조)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지하작업장을 인화성 물질 및 저장·취급하는 설비가 있거나, 오수·폐수·분뇨 등의 부패·분해, 그 밖에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마.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정비(안 제335조)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불을 조정하는 경우 위험요인을 감전, 전도, 붕괴 등으로 명확히 정하고, 콘크리트타설장비와 주변 시설 사이에 적정한 간격의 유지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예시로 제시함.

바. 벌목작업 시 위험 방지사항 추가(안 제405조)

수구 절단부보다 벌목하려는 나무 지름의 10분의 1 이상 높은 위치에 추구를 만들고, 경사지에서 조재작업 시 목재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벌목작업 시 안전조치를 강화함

사. 한파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 신설(안 제563조)

근로자가 한파 노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한파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리고, 보온 기능이 있는 의류, 장갑 등을 착용토록 지도하며,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며,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된 경우 등에는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근로자 한파작업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7. 14. ~ 8. 24.)

3) 행정규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본문 중 “이하에”를 “미만 지점에”로 한다.

제241조의2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작업 중 불꽃·불티가 가연성물질 등에 비산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지 여부의 확인

5. 작업이 종료된 후 잔여 불꽃·불티가 있는지 여부 또는 화재가 발생하는지 여부의 확인

제262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그 후단에 배출물질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밸브 작동 시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속설비의 안전검사내용을”을 “부속설비와 이에 관계된 안전장치 등의 기능 이상 유무를”로 한다.

제29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화성”을 “인화성 물질 및 이를 저장·취급하는 설비가 있거나 오수·폐수·분뇨 등의 부패 또는 분해,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으로 한다.

제299조제7호 중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경보”를

“독성물질의 외부 누출 여부를 확인”으로, “설비”를 “감지 및 경보 설비”로 한다.

제335조제3호 중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을 “콘크리트타설장비와 주변 시설 사이에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등 감전, 전도, 붕괴 등의”로 한다.

제341조제1항 중 “건설물에”를 “건축물등에”로, “건설물을”을 “건축물등을”로 한다.

제3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물”을 “건축물등”으로 한다.

제40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추구(따라베기)는 수구 절단부보다 벌목하려는 나무 지름의 10분의

1 이상 높은 위치에 만들 것

6.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말뚝 등으로 목재가 굴러떨어지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제548조 중 “「해사안전법」 제85조제5항제2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92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55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파”란 근로자에게 저체온증·동상·동창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의 기상현상을 말한다.

제563조의 제목 “(한랭장해 예방 조치)”를 “(한랭·한파장해 예방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한파 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옥외 작업을 하는 등 한파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근로자에게 한파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릴 것
2. 근로자에게 보온 기능이 있는 의류, 장갑, 신발 및 머리와 귀를 덮는 모자 등을 착용하도록 지도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작업시간대를 조정할 것. 다만,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온 기능이 있는 의류 등을 착용하게 하는 등 체온의 하강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한랭작업 또는 한파에 노출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해야 한다.

별표 4 제8호라목 중 “가설 철구조물”을 “가설구조물”로 한다.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 관련)

8. 교량작업	-	라.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구조물 등의 설치·사용·해체 시 안정성 검토 방법
---------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 치해야 한다.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 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 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 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 미터 <u>이하</u> 에 설치하는 경우에 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 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 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 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 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 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 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	2. ----- ----- ----- ----- ----- -- <u>미만 지점에</u> ----- ----- ----- ----- ----- ----- ----- ----- -----.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단서 신설>

2. -----

-----.

다만,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그 후단
에 배출물질 처리설비를 설치

3. (생략)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제350조에 따른 터널 등의 건설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가스도관에서 가스가 발산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굴착작업(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그와 근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지반의 굴삭 또는 이에 수반한 토사등의 운반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u>하여 안전밸브 작동 시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3. (현행과 같음)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① ----- ----- ---- <u>부속설비와 이에 관계된 안전장치 등의 기능 이상 유무를</u>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 <u>인화성 물질 및 이를 저장·취급하는 설비가 있거나 오수·폐수·분뇨 등의 부패 또는 분해,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u> -- ----- ----- ----- ----- ----- ----- ----- -----
--	--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2. (생략)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 것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 2. (생략)

3. 콘크리트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

1. · 2. (현행과 같음)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

-----.

1. ~ 6. (현행과 같음)

7. --- 독성물질의 외부 누출 여부를 확인-----
----- 감지 및 경보 설비-----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시의 준수사항) -----

-----.

1. · 2. (현행과 같음)

3. -----
----- 콘크리트타설 장비와 주변 시설 사이에 적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생략)

제341조(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매설물
· 조적벽·콘크리트벽 또는 옹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 해당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① 사업주는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함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405조(별목작업 시 등의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별목작업 등

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등 감전, 전도, 붕괴 등의 ---

4. (현행과 같음)

제341조(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① -----

----- 건축물등에 -----

----- 건축물등을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① -----
----- 구
축물등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05조(별목작업 시 등의 위험방지) ① -----

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 2. (생략)

<신설>

3. · 4. (생략)

<신설>

② (생략)

제548조(잠수신호기의 계양) 사업주는 잠수작업(실내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장소에 「해사안전법」 제8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5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신설>

-----.

-----.

1. · 2. (현행과 같음)

3. 추구(따라베기)는 수구 절단 부보다 벌목하려는 나무 지름의 10분의 1 이상 높은 위치에 만들 것

4. ·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6.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말뚝 등으로 목재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② (현행과 같음)

제548조(잠수신호기의 계양) ---

-- 「해상교통안전법」 제92조 제5항제2호-----
---.

제558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한파”란 근로자에게 저체온

제563조(한랭장애 예방 조치) (생략)

<신 설>

증·동상·동창 및 그 밖의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의 기상현상을 말한다.

제563조(한랭·한파장애 예방 조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한파 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옥외 작업을 하는 등 한파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근로자에게 한파에 따른 건강장애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릴 것

2. 근로자에게 보온 기능이 있는 의류, 장갑, 신발 및 머리와 귀를 덮는 모자 등을 착용하도록 지도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작업시간대를 조정할 것. 다만,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온

<신 설>

기능이 있는 의류 등을 착용
하게 하는 등 체온의 하강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한랭작업
또는 한파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의 작업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
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
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
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해야 한다.